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8
----------	------

제출연월일: 2025. 5.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과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조문 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를 목적규정에 명시

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 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가 포함'됨을 명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6485호, 2025. 4. 14.)

라. 입법예고: 2025. 4. 14. ~ 4. 21.(7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수료”를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p>
<p>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 ①보건소장의 제증명 또는 진단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발급범위 및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 ①----- -----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보건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정희화
- 연락처: (052)290-4311